

「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-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출연금을 2026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기관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- 2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3) 출연금액 : 300백만원
- 4) 사 용 처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조성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 업 명 :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
- 2) 운용주체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- 3) 사업내용 :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사항인 상생협력기금
운용 및 센터운영관리를 통한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
- 관내 이차전지 관련기업 기술개발 지원

- ESG경영 전략 수립 지원
-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- 기업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지원 등

다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1) 출연안 제출 : 2025. 9월
- 2) 출연안 심사 및 의결(제290회 임시회) : 2025. 9. 10. ~ 17.
- 3)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출연 : 2026. ~ 2027.
- 4)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업무추진 및 기금운용 : 2026. ~

라. 기대효과

- 1) 기금운영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[(주)LG-HY BCM]과 구미 소재의 이차전지 관련기업 및 종사자에게 상생협력사업, ESG기반 구축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하여 구미시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 기여
- 2)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노사상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
-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 제7조, 제1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‘구미형 일자리 노·사·민·정 상생협약(2021.11.10.)’ 이행사항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생협약에 따라 경상북도, 구미시, 상생기업(LG-HY BCM, 디아이지에어가스)에서 2024년부터 상생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2024년 8월부터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해당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.
- 현재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개소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 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·분석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